정책 제안서

행정 정보 전달을 위한 촉수어 통역사 양성 제안

작성 참여 김은준 · 정용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청년참여)」 제안사업 신청서

제안 개요

항목	내용
제안 사업명	행정 정보 전달을 위한 촉각어 통역사 양성 사업
사업대상	경기도 내 촉각어 통역사 과정 수강 희망자
총 소요사업비	80,000천원
산출내역	80,000천원 (산출내역 강사료 50,000천원 + 대관비 20,000천원 + 온라인 회의 관련 10,000천원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1년 이내)
사업지역	경기도

사업목적

본 사업은 시청각 장애인이 공공 행정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촉각어 통역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촉각어 통역사의 양성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평등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 운영 일정(예시)

시기	내용
1~2월	사업 계획 수립 및 교육 커리큘럼 확정, 홍보 계획 수립
2~6월	교육생 모집 공고 및 홍보, 교육생 선발
6~7월	오리엔테이션, 기본 수어 과정 진행
7~8월	행정 정보 수어 전문 과정 진행
8월 말	최종 평가 및 수료식, 수료증 발급

(*주말 등 활용 가능)

추진근거

대한민국헌법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장애인복지법

□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적용된다.

② 시청각중복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장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과 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7조(의사소통 지원) 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시청각중복장애인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제9조(시청각중복장애인 등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인력 지원)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홍보)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기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1) 촉각어 통역 관련 이론 및 실습 교육 과정 개설

- 기초과정: 촉각어의 기본 이론 및 문법, 기본적인 수어 표현방법을 포함한 교육 과정 설계

- 심화과정: 장애인 복지, 법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 용어를 포함한 심화 교육 마련

- 실습 프로그램: 실제 통역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능력을 배양

2) 커리큘럼: 기초 촉각어, 행정 전문 용어 촉각어, 공공정보 통역 실습 등

- 촉각어의 기본 문법과 표현법 습득, 일상생활 표현, 공공기관 관련 기본 어휘 학습

- 공공기관 행정 문서 및 서비스 관련 촉각어 표현 교육. 민원, 복지, 세금, 교통 등

주요 행정 분야별 용어 습득

- 공공기관 및 지역 커뮤니티 현장에서 촉각어 통역 실습

3) 과정 70% 이상 이수자에게 수료증 발급 및 행정기관 통역 연계 지원

- 우수 이수자에게 향후 유관기관 일자리 연계

4) 협력 기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재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각 지자체 청년공간

기대효과

공공기관 촉각어 통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청각 장애인의 행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포용적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추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로 인해서, 일자리 등에 참여할 수 있다.